



www.caind.or.kr

# 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우 31075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5로 36(차암동) 4층 전화 041)621-6524 팩스 621-6527 주임 김민중(caind@caind.or.kr)

문서번호 천산관 제 90 호

시행일자 2026. 6. 23. (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 제목 사업장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천안시 기업지원과-6501(2026.6.19)호와 관련하여 최근 관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공장, 축사, 대규모 점포 등)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불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재 ·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등 홍보자료 각 1부 끝.

## 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받는곳 : 국제엘렉트릭코리아(주) 외 53개 입주기업체 대표자, 차암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장, 룩소르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장.

#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예방수칙을 준수·점검하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화재·폭발 사고사례

- '26년 1월 경기 양평 소재 인테리어 현장 컨테이너에서 도장작업 중 화재 발생  
충북 음성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체 내 폐지보관소에서 화재 발생
- '26년 2월 경기 시흥 소재 식품 제조업체 내 오븐 인근에서 화재 발생  
경기 포천 소재 사업장에서 드럼통 절단작업 중 폭발 발생  
경북 경산 소재 유류보관업체 내 저장탱크에서 화재·폭발 발생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인화성·가연성물질 화재·폭발 예방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
	☑ 인화성·가연성 물질 주변 화기 사용 금지 등 점화원과 차단·격리
	☑ 가습·제전장치 및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복 착용 등을 통한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전기기구 화재 예방조치	☑ 난방기구 등 전기기계·기구의 과열방지를 위해 사용 후 전원 차단
	☑ 누전·과전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장치 설치 및 관리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전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화재 대비 비상조치	☑ 화재예방·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
	☑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 비상대피 시설은 이렇게!



## 통로

- ☑️ 작업장 어디든 비상구까지 연결
- ☑️ 깜깜해도 잘 보이게(피난유도선, 비상조명 등)
- ☑️ 항상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제거



## 비상구

- ☑️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
- ☑️ 작업장에서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 문은 항상 쉽게 열리도록 유지(장애물 제거)



## 경보 설비

- ☑️ 작업장 어디에서든 25m 거리 내
- ☑️ 0.8m~1.5m 높이에 설치
- ☑️ 음량은 90데시벨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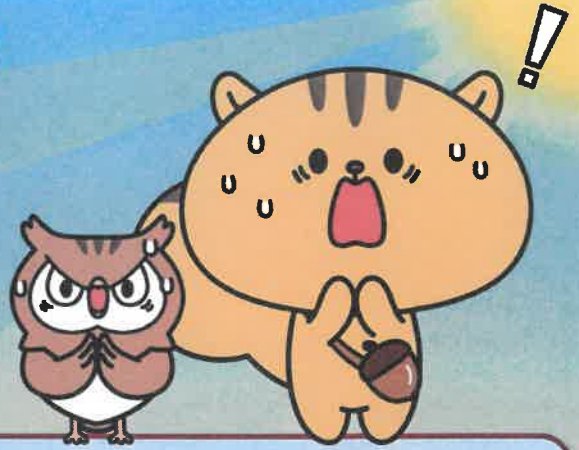


- ❶ 피난안내도를 작업장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세요.
- ❷ 비상시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C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 다중이용시설에서

##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시설책임자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시설이용자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설책임자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시설이용자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시설책임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시설이용자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